● 제33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645)

2025. 4. 2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645

Ⅰ. 조례안 개요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25년 3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02일

2. 제안이유

○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결혼 · 살림 비용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의9 신설)

- 사업 예산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

- 자치구에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

나. 그 밖의 문구 정비

-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 위탁 및 비용 지원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의견내용: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위법·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등의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처리 조항 마련 필요
- 반영사항: 사업 실행 방침 수립 시 지원금 환수 등 내용을 포함하며, 지원금 지급 시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징수하는 방안을 시스템에 구현 예정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2. 13. ~ 3. 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초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장이 제출함.

2 주요사항 검토

가. 배경 및 개정취지

○ 최근 통계청[1]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서울 4만2천 건)으로, 1970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혼인 건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초혼 평균 나이 증가, 코로나19 이후 증가 등이 있으나, 무엇보다 혼인과 출산의 필요성을 느끼는 젊은 층이 늘어난 데다 정부 차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책들이 나오면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증가를 견인했다는 의견이 다수임.

○ 이에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 중 출산 · 육아기에 집중된 지원을 정책 사각지대인 결혼기 대상자에게 확대하여 신혼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로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 예정 중이며 동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인정되는 바임.

---

1) 통계청(2025). 인구동향조사.
KTV대한뉴스(2025.3.20.).지난해 혼인 건수 증가율 14.8% ’역대 최대’

나. 신혼부부 결혼 · 살림비용 지원 규정 신설 (안 제4조의9조)

○ 안 제4조의9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혼부부의 결혼 및 살림비용’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9(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① 시장은 결혼·살림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법적 개정 가능성 검토

- 동 개정안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2] 및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3]를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2호가목[4] ‘주민복지에 관한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사업' 사항에 해당하는 결혼·출산·양육 전 주기에 걸친 지원정책 수립에 의한 시책사업으로서 규정 가능함.

② '신혼부부 결혼· 살림 비용지원' 사업 적절성 검토

- '신혼부부 결혼 · 살림비용 지원 사업' 은 신혼부부에 결혼 준비 및 살림 마련 비용지원을 통해 결혼기 지원 공백을 메우고,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일환임.

- 통계청에 따르면[5], 결혼한 부부 중에서도 출산을 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늘고, 혼인 건수가 출산으로 이어지는 개연성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밝힘. 이는 '결혼 지원 → 출산율 상승'이라는 정책 도식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신혼부부가 실제 결혼 및 살림 준비에 지출하는 평균 비용이 약 3억 원[6]임에도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100만 원'지원은 약 0.3% 수준에 불과하여 결혼 결정 자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금액임.

- 특히 결혼 준비 비용 중 실질적 부담인 주거 · 대출비용이 아닌[7] 예식장, 혼수, 가전, 신혼여행 등 소비성 지출 위주의 1회 지원이 결혼율 및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업 적절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5) 파이낸셜뉴스(2024.2.28.)."0.72명 바닥 아니다" 올해 합계출산율 0.68명 예상…출산 기피 계속

6) 통계청(2023).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식변화
결혼정보회사 듀오. '2025 결혼비용 보고서'

7) 국토연구원.「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국토정책Brief 제947호, 2024.1

③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검토

- 동 사업은 연간 201억 원(1가구당 100만원 × 20,129가구)의 시비 지출이 수반되며, 5년간 1천억 원 이상의 누적 재정부담이 예상됨. 시 예산만으로 전액 충당될 계획이나, 혼인율 변화나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예산 초과 가능성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부담을 고려한 장기적 계획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시행기간: 비용은 시스템 개발 완료 후 사업개시 시점부터 발생 예정

○ 지원 금액 및 지원 항목 :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최대 100만원** 환급 지원

- 지원항목

• 결혼준비 : 혼수, 예식장, 신혼여행, 앨범제작, 청첩장 등 (※ 스드메, 공공예식장 미포함) • 혼인살림 : 전자제품, 주방가전, 소형가전, 가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

○ 지원 대상 가구수 계산

- 2023년 만19~49세 서울시 거주자 혼인건수 : 33,548건
-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비율 : 77.3%*
  *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작성방법 및 의의
- 중위소득 150% 이하(연소득 약 7천만원) 신혼부부 비율 : 56.2%
  ※ 2023년 전국 초혼 신혼부부 769,067쌍 중 소득 7천만원 미만 신혼부부는 432,031명으로 56.2%
- 통계청 소득분배지표를 고려했을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77.3%,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를 고려했을땐 56.2%이나, 서울시 인구대비 청년비율·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를 **전체 가구 중 약 60% 비율**로 설정
- **33,548건 x 60% = 약 20,129건**

○ 비용추계 산식

- 신혼부부 1가구당 최대 100만원 x 20,129가구 = **20,129,000,000원**
- 신혼부부 20,129가구 x 5년(100,645가구) = **100,645,000,000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20,129,000	20,129,000	20,129,000	20,129,000	20,129,000	100,645,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합계		20,129,000	20,129,000	20,129,000	20,129,000	20,129,000	100,645,000

④ 사무위임의 타당성

- 안 제4조의9 제2항은「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8]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제3조[9]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제고와 신속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으로 개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치구 간 행정적 집행 여건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과 심사기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준화된 메뉴얼과 교육 등 체계적 절차 마련이 요구됨.

다. 부칙 개정 (안 부칙 제2조)

○ 아울러 동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안 제4조의9의 적용 시점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9의 신설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부터 적용한다.

○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 기준선 명확화 및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

---

8)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9)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① 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제3조(위임사무) 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기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 발생일 이후의 사실행위(혼인신고)에만 적용하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나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음.

○ 다만, 다음과 같이 정책 대상자 간의 형평성 및 실무적 사항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① 2024년 12월 31일 혼인신고자와 2025년 1월 1일 신고자 간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지원 여부가 갈리는 데 대해 경계선 수혜 불균형에 대한 민원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

② 조례 공포 이전에 혼인예정자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지원 제외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가 이어질 수 있음.

라. 용어 정비 등

○ 동 개정안은 안 제4조의9 신설 규정 이외에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7, 제8조 규정의 띄어쓰기, 큰따옴표 표기(“-”), 표기 변경(시→서울특별시), 한자어의 한글 순화표현(자→사람) 등 규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법정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바람직해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1인 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9. ----------.
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다.「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 ---------- ---------- ----------
라.「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라.「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① ~ ⑤ (생 략)	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⑥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 ③ (생 략)	제4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상 아이의 부모의 가족관계증	2. ----------

현 행	개 정 안
명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본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서울시 공공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① ---------- 서울특별시에 ---------- 사람이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 특성에 맞는 저출산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8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저출산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3 종합의견

○ 동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법을 위해 기존의 출산·양육 중심 지원에서 결혼 기로의 정책 확장을 시도한 선제적 정책으로 그 필요성과 입법 취지는 인정되는 바이며 개정안의 법적 문제는 없어 보임.

○ 다만, 막대한 市 예산이 투입되는바, 실제 동 사업이 저출생 해법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며 향후 혼인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장기적인 수요예측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